〈華甲紀念對談〉

李泰魯 敎授의 生涯와 學問

듣는 이 : 權光重(서울高等法院 部長判事, 司法硏修院 敎授)
李哲松(漢陽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玉武錫(韓國放送通信大學 法學科 敎授)
安慶峰(嶺南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일 시 : 1992. 3. 2. 오후

장 소 : 李泰魯 敎授 硏究室

회갑을 맞는 소감

權光重 : 선생님 回甲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回甲을 맞이하여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이야기를 듣고, 학문하는 자세라든가 후학들에게 지침이 될만한 말씀을 주셨으면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라든가 교과서라든가 논문등을 통해서 학문적인 가르침은 많이 받았는데, 선생님이 가슴에 품고 계시는 인생이야기는 들을 기회가 적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回甲을 맞이하시는 소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李泰魯 : 어느듯 回甲이 되었습니다. 算術的으로 61회의 생일이 가까와 온다는 것은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고맙게도 여러분이 기념논문집을 꾸민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정말 나에게 回甲이라는 것이 닥쳐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뒤돌아 보면 부족한 것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나의 경우에는 성격탓인지 특별한 목표라는 것을 정해서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는 열의가 부족한 생활을 해 온 까닭에 더욱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좋게 말하면 "바람같이 물같이" 살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별로 알찬 인생이 아니었다고 반성도 하고, 아쉬움도 없을 수 없습니다. 집착하지 못하고 諦念을 잘합니다. 실은 諦念 이전에 無念이라야 하는데…. 수명이 많이 길어진 요새 와서는 還甲을 지낸다고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든가, 60이면 아직 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남이 그런 말을 할 때에는 慰安의 말이요 본인이 할 때에는 虛勢일 수 있습니다. 인생을 하루 24시간에 비유하면 60세는 午後 6時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사실은 관대하게 보아서 그런 것이고…. 왜냐하면 오후 6시면 아직도 하루의 4분의 1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일생에 있어서 4분의 1이 남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80세를 산다고 하는 전제아래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평균연령은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이면 凡人에게는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할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책상을 정리하고 퇴근길에 올라서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귀가하여 10시에 잠자리에 드는 사람도 있고, 예외적으로 다음날 새벽까지 일을 하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역시 정리하는 단계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출생과 성장과정

權光重：선생님 號를 "행솔"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요? 선생님께서 손수 지으셨나요?

李泰魯：사실은 號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집의 족보를 보니까 號를 가지신 분이 몇 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보면 웬만하면 號를 갖고 그러더라구요. 실은 10여년 전 朴秉濠 학장이 「小松書室」이라는 揮號를 써준 일이 있어요. 저의 祖父의 號가 晩松이니까 孫子라고 해서 小松이라고 했나봐요. 최근에 법대 동창회 부회장이신 李相赫변호사를 통해서 如初 金膺顯선생한테 여쭈어 보았어요. 그 분이 저의 고향이 白松이라는 것을 들으시고, 여러모로 검토해 보시더니 이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랍니다. 白松이라는 漢字로 이름이 붙기 전 저의 고을의 본래 명칭인(오늘날에도 같습니다) "행솔"이라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소나무에서 벗어 나지는 못하는 모양입니다.

權光重：선생님께서는 전통있는 훌륭한 家門의 後孫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眞城李氏이시지요?

李泰魯：本貫은 眞城이고 본적은 慶北 醴泉郡虎鳴面白松里입니다. 地名이 말해주는 것처럼 벽지이지요. 慶北의 北部地域이라 아직도 未開發 입니다. 별로 자랑할 것은 없고, 다만 아직도 白松에는 400년전부터 조상대대로 살아온 宗宅이 있습니다. 또 저의 16代祖이신 "閎"字 "道"字 遇巖公께서 건립하신 亭子가 400여년 유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낙동강 상류인 乃城川가에 있는데, 지금도 비교적 물이 맑아서 멱을 감습니다. 그 亭子의 이름이 仙夢臺입니다. 仙夢臺라고 하는 현판은 遇巖先祖의 從祖父이신 退溪先生이 써 주셨습니다. 이亭子에는 많은 명사들이 다녀 가셨습니다. 鷄峰 金誠一, 西厓 柳成龍, 漢陰 李德馨, 藥圃 鄭琢, 淸陰 金尙憲 등의 필적이 액자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있는 安교수도 다녀 갔으니 대단한 셈이죠. 10여년 전 郭潤直교수, 朴秉濠학장 등도 찾아 주셨지요. 先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일년에 몇번씩은 가 보곤 합니다. 저의 祖父때에 醴泉에서 서울로 이사를 오셨고, 저 자신은 그 중간에 醴泉君 龍門面 金谷里(금당실)에 내려와 살 때에 거기에서 태어 났습니다.

權光重：국민학교는 어디에서 다니셨습니까?

李泰魯：어릴 때에 명륜동에서 살아 지금의 혜화동성당의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지금도 자애로왔던 수녀들의 기억이 있어요, 또 거의 50여년 지나서 천주교세례를 받게 된 한 動機가 된 것도 같습니다. 그 뒤에 종로구 창성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덕수국민학교를 다녔고, 그 다음에 6년제인 중앙중학교를 다녔고, 서울大學校 法科大學에 들어 왔습니다.

權光重：국민학교동창 중에서 아직도 交分을 맺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李泰魯：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 曺大京 교수가 있고, 모교인 中央高等學校의 趙弘植 校長이 있습니다. 趙교장은 국민학교 중학교 대학교의 세겹동창입니다.

權光重：朴秉濠 학장님과도 동창이시지요?

李泰魯：朴秉濠 학장과는 中央中學校를 같이 다녔습니다. 저는 중앙중학교를 1학년때부터 다녔고, 박교수는 해방된 다음에 광주서중에서 전학을 왔습니다.

權光重：선생님 집안이 長壽 집안이시라지요? 선생님께서는 아직도 부친을 모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모님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李泰魯：저의 先親께서는 中學은 배재중학교를 다니셨는데, 배재중학교의 동창 중

특히 임철호전법무부장관, 조평재전변협회장 및 지금도 생존해 계신 배명학원의 조용구이사장님과 친교가 두터우셨습니다. 뒤에 명치대학 法學部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1900년생이시고 4형제분이신데, 작년에 세째숙부가 돌아가시기까지는 4형제분 모두가 전부 8旬이상 생존하셨습니다. 일제시대에 잠시 은행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는 쭉 사업에 종사하셨습니다. 근검과 나무사랑은 참으로 대단하시지요.

權光重：外家쪽은 어떻게 되시나요?

李泰魯：外家쪽은 仁川 蔡氏입니다. 우리 어머님고향은 상주군 이안면 중촌리입니다. 어머님은 아버님보다 세살 年上이십니다. 우리 집안이 宗家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큽니다. 요사이는 핵가족화해서 별로 모이지 않지만 과거에는 명절때나 제사가 있으면 100여명이 모입니다. 우리 아이까지 18대이어지는 宗家의 宗婦가 되어서 어려운 살림을 꾸려 나가시느라 애도 많이 쓰셨고, 그로 인해 칭찬도 많이 들으셨습니다. 증조모께서도 仁川 蔡氏입니다.

가 정

權光重：너무 이야기가 딱딱한 것 같아 부드러운 이야기로 바꾸어 볼까 합니다. 선생님의 戀愛時節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선생님은 사모님과 戀愛結婚하셨나요, 仲媒結婚하셨나요?

李泰魯：…집안간에 서로 알고 지나던 터이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權光重：선생님의 자제분이 모두 서울대 출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제분은 몇남 몇녀이십니까?

李泰魯：2남 1녀인데, 준서, 준상, 준선입니다. 준서가 동기동창과 혼인을 하여서 子婦를 보았고, 이번에 독문학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입학했습니다. 陸士의 독일어교관으로 임관예정입니다. 둘째가 이번에 건축학과를 졸업해서 건축설계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막내는 지금 소비자아동학과 3학년에 재학중입니다.

법대를 선택하게 된 동기

權光重：선생님은 비교적 多福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갖추어야 할 五福을 다 가지신 것 같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학업과정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法大를 특히 선택하시게 된 動機를 말씀해 주십시오.

李泰魯：나도 여기 나오기 전에 다른 분들 對談한 것을 조금 豫習해왔습니다. 다른 분들 것을 보니까 거의가 법대에 올 것이 아니었는데, 법대로 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문학을 하려고 했다. 해양대학을 가려고 했다. 의학을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법대로 오게 되었다는 식으로 의외로 망설인 끝의 선택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法學을 본의아니게 선택한 것처럼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편 재미있게 생각했는데…. 제가 1950년에 대학입학시험을 칠 때에는 延大가 特次이었습니다. 성적이 괜찮다고 하는 학생들은 응시하여 나쁠것이 없으니까 연대특차를 쳤습니다. 그래서 연대특차를 쳤는데, 당시 연대에는 法科大學이 없었습니다. 제일 인기있는 학과가 정치외교학과이었습니다. 정치외교학과를 쳤더니 합격이었습니다. 함병춘교수와 같은 분이 연대정치외교학과를 나온 것은 특차시험을 붙고 그냥 연대에 머무른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실은 그때에 동숭동캠퍼스를 보다가 연대캠퍼스를 보면 국민학교건물만 못하여 도저히 학교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교수가 된 뒤 입학시험을 보러온 수험생들한테 '法科大學을 왜 지망했느냐'고 물어볼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대답을 얻으려고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 반응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 대답이 없

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어릴 때 法學에 취미가 있었다고 하는데, 法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취미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좀 우습지요. 막연한 동경이겠지요. 이 점은 권판사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권판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權光重：선생님말씀과 같이 저도 특별히 動機가 있어서 지원했던 것은 아니고 누구의 표현처럼 다만 법대가 있으니까 법대에 지원했다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웃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다른 분들도 다 그러리라 생각되는데요….

李泰魯：우리의 대학지원시절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회적 상황이었지요. 무엇을 해야 꼭 좋다 하는 전문화가 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학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전공을 택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사적회으로 分化된 상황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무슨 대단한 산업이 있었습니까. 직장이 반듯한 것이 있었습니까. 法學에 대한 그 당시의 인식은 대학교육의 文科중 대표적인 科라는 것입니다. 그 때로 보면 法이라고 하는 것을 지극히 광범위하게 생각했습니다. 商科大學은 갈 수가 없었어요. 상과에는 학생이 별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法科大學을 칠 때에는 상과는 1차에 충원이 되지 않아서 입학시험을 또 한번 쳤습니다. 그 때 文科로서 인기가 있다면 정치학과하고, 영문학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치학과 지망은 정치학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물론 있었겠지만 정치계에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저는 남의 앞에 나설 그릇이 못되기 때문에 그것은 적당하지 않았고, 갔었다면 영문과라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영문과 교수가 들으면 크게 노하겠지만, 당시의 나의 무식한 생각으로는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어차피 다 하는 것으로 알았지요. 연대 정치외교학과는 특차이고 남들이 가니까 한번 쳐본 것이지, 정치외교는 본래 내 체질에는 안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elimination process라고, 하나하나 제하다 보니 法學을 택한 것이지 法學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있어서 법대에 왔던 것도 아니고, 사실 요사이 전문화가 되어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法曹다 醫師다 하는 전문직이 전통사회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의 追仰하는 직종은 아니었지요. 예를 들면 서울대학안에 중앙출신교수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때 의대교수로 계신 저보다 3년선배의 某교수가 中央을 나오실 때에는—中央은 몹시 작은 학교입니다. 제가 中央을 졸업할 때에는 3 class밖에 안 됩니다. 문과 2 class와 이과 1 class입니다.—그 작은 학교에서 12명이 서울대 의대에 같이 들어 왔다가 졸업할 때에는 2명이 졸업했답니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戰時라는 특수상황도 있었습니다만…. 요새 같으면 누가 의과대학에 들어와서 포기를 합니까. 그래서 法科大學에 온다고 하는 것이 꼭 法曹人이 되겠다는 목표의식가지고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權光重：法科大學이 그 당시에도 요사이처럼 입학하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었나요?

李泰魯：많은 사람들이 法大를 선호한 것은 사실이지요. 요사이처럼 치열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에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입시준비에 힘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때는 자녀들이 다 5, 6명 되는데 요새 외아들 뒤 봐 주듯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호구지책이 당장 급한데요.

법대입학과 6·25 사변

權光重：대학재학중 서울에서 6·25를 만나셨다는데, 당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李泰魯：6·25를 이야기하면 말이 길어집니다. 5월 12일에 입학을 해서 2주 미쳐 못

다니다가 6·25가 발발을 했는데, 하도 정부에서 자신있게 말했기 때문에 아예 피난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고지식하게 학교는 학교니까 반드시 가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갔었습니다. 들어갈 때에는 자유롭게 들어갔는데, 일부 학생들이 벌써 완장을 차고, 머리띠를 두르고, 무슨 위원회다 해서 벌써 조직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그 때는 그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國大案 반대운동때부터 내려오던 좌익세력들이 있었으니까요. 들어가 보니가 선생님들은 보이지 않고 소위 학생간부들만 왔다갔다 하기에 돌아 가려고 하니까 교문을 보초가 막고 서 있었습니다. 당시 학생들을 의용군으로 데려가려고 집에 못가게 막았습니다. 정신을 가다듬어 생각하니 동숭동 문리대쪽으로 나 있는 구름다리가 생각났습니다. 그리로 해서 문리대정문으로 빠져 나가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리로 갔으나 사정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리대에 갓 입학한 중학교동기동창이 마침 완장을 차고 있어서 '나 좀 집에 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대답도 하지 않고 나를 보는데, 섬찟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서 法大로 되돌아 왔습니다. 지금도 나 자신이 담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담을 뛰어넘고 왔으면 되었을 텐데, 담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 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꼭 문으로만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權光重：선생님은 그 때부터 legal mind가 철저하셨군요. (웃음)

李泰魯：그게 아니지요. stupid mind지요. (웃음) 그런데 마침 중학동창인 엄기윤이라고 하는 친구가 교대근무로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가 통과시켜 주어서 빠져 나온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내준 엄기윤이라고 하는 사람도 동창회명부에 의하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학교를 가지 않고 창성동집에 있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되어 도렴동쪽으로 피신하여 마루밑에서 숨어서 UN군이 진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색을 당한 적이 있어 거기도 안전한 곳이 못 된다고 판단되어 고양군으로 다시 옮기게 되었는데, 옮긴 다음날 도렴동집이 폭격을 맞았습니다. 안전하리라고 생각하여 피신한 고양군은 북쪽이고 시골이다 보니까 얼굴이 낯선 사람의 눈에 잘 띄게 되어 오히려 위험을 느껴 서울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과정의 검문검색과정에서의 고초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그 때 가깝게 지내던 친구기 자신의 고향인 천안에 가 있으라고 해서 천안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 때가 1950년 8월 중순 무렵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온갖 광경을 다 목격했습니다. 거기도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와서 영등포일가집에 있다가 9·28 수복을 맞이 했습니다.

인생관·종교관

安慶峰：저희들 法學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論理的인 것을 좋아 하다 보니까, 宗敎라는 것이 대개 先驗的이랄지 直觀的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언뜻 빠져 들기가 쉽지 않은데, 宗敎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 하십니까?

李泰魯：저는 宗敎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宗敎에 관한 한 저는 미성년이라도 한참 미성년입니다. 영세받은 때로부터 새로운 출생으로 보는데, 그 때로부터 보면 유치원을 겨우 졸업할 나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누구더러 내가 신자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믿는 자가 信者인데,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法學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논리추구적인, 현실추구적인 사람들이 많지 않나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고, 따라서 신자라는 말은 아무에게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다닌다" 그런 표현만을 씁니다. 그나마 좀 빼먹습니다.

저는 法學에도 論理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感性도 理性과 병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판단할 때에도 항상 論理的 過程을 통해서만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直觀的으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 놓고 소위 after-thought로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그것이 Herman Oliphant, Underhill Moore 등의 법현실주의자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과 느낀다고 하는것, 이것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孔子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도 상당부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溫故而知新이면 可以爲師矣니라"는 명언은 퍽 평범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하는 소리이고, 聖賢이 말할 때에는 참으로 깨닫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값어치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깨닫지 못한 덕에 마음이 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안다는 것과 느낀다는 것 또는 깨닫는다는 것이 같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宗敎라는 것을 알아서 믿는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靈的인 것을 본인이 느껴야지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논리를 전개해서 알 수 있는 것의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直觀이 論理展開보다 정확합니다. 논리전개에서 오히려 타당성이 결여된 이상한 결론에 도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체험이랄지 깨달음으로 간다는 것은 자기에게 와 닿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과대학시절의 학업과정

玉武錫 : 事變이후 선생님께서 留學을 가시기까지 사이에 특이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생각이 나시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李泰魯 : 9·28 收復한 다음 우리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또 중공군의 개입으로써 1·4 후퇴를 하면서 온가족이 부산으로 피난을 갔었습니다. 부산으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몸만 빠져 나와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에 전혀 불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원할 따름이었지요. 저는 그 때 부산의 천막학교인 戰時聯合大學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53년에 정부가 還都함에 따라서 함께 상경했고, 6·25때 한학기 놓친 까닭에 8회 후기로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후기로 졸업하는 바람에 9회졸업생하고 묶여서 광주보병학교에 장교전반기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왠고 하니 9회졸업 2학기 때 문교부장관이 이선근씨이었는데, 졸업하기 전에 광주로 데려가서 장교전반기훈련을 받게 하였습니다. 나는 1학기 졸업이니까 훈련대상에서 제외되는 줄 알았더니 남들 가는 날짜에 졸업했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해서 결국 9회하고 같이 광주보병학교에 장교전반기훈련을 받았습니다. 당시 병역제도는 훈련을 마침과 동시에 일등병으로 전역시켰다가 졸업한 후에 군에 재입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외가 두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학원입학생이고, 또 하나는 留學시험 합격자였습니다. 그 때 대학원시험에는 12명만 합격시켰습니다. 제가 대학원시험에 합격한 후, 곧 문교부에서 실시하는 留學시험에도 합격했기 때문에 대학원을 다니다가 留學을 가게 되었습니다. 유학에서 귀국하니까 그것으로 병역을 畢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때 벌써 나이도 많았으니까 쓸모

도 없었겠지요. 결과적으로 광주에 잘 갔다 온 것이 되었지요.

權光重：聯合大學을 다니셨다고 말씀하셨는데, 聯合大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李泰魯：國立大學들이 피난가서 국립대학 학생을 통합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 聯合大學을 부산, 광주, 대구에 하나씩 세군데 만들어 놓았습니다.

權光重：충남대학, 충북대학 등 지방대학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까?

李泰魯：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산 戰時聯合大學을 다닐 때는 사실상 서울대학입니다. 선생이고 학생이고 전부 서울대학 사람이지 무슨 대전에서 왔다든가, 전북대학에서 왔다든가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玉武錫：이제 학문쪽으로 화제를 돌려 보겠습니다. 법대재학시 특히 선생님을 아끼셨거나, 기억에 깊이 남아있는 은사님은 누구십니까?

李泰魯：법대다닐 때 인상깊었던 교수님들은 劉基天선생님, 高秉國선생님, 金曾漢선생님, 鄭光鉉선생님, 黃山德선생님 그리고 申泰煥선생님과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이 분들은 해방후의 고등교육의 공백을 메워주시고 오늘날의 法學교육의 기초를 쌓아놓은 분들입니다. 지금 보면 대체로 제 전공하고는 관계가 적은 분들이지요. 어떻든 재학시절에 劉基天선생님의 학문과 학교에 대한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감명깊었고요. 金曾漢선생님의 학문적으로 엄격한 모습도 그 당시로서는 불평이 있었지만 역시 교육하는 사람은 그래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申泰煥선생님은 그 때 Keynes이론을 도입하셔서, 흥미있게 강의를 하셨습니다. 자주는 찾아뵙지 못하지만, 지금도 가끔 뵈면 기억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보이고 감출것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紳士라고 이름붙일수 있는 분히 흔치 않은데, 그 분이야말로 紳士라고 생각합니다.

玉武錫：대학원가셔서는 專攻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李泰魯：그 당시에는 전공이라는 것이 따로 없었습니다. 商事法에 관한 과목을 두어 과목 수강한 기억이 있습니다. 留學준비에 더 열중하고 있었지요. 그 때 해외여행 절차도 복잡했고 어학도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9회졸업반은 부산에 피난가서 입학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안정되게 공부를 했고, 7회는 그래도 事變 勃發前에 1년을 함께 공부했던 class입니다. 우리 8회는 대학원에 이르러서까지도 틈바구니에 끼여 지내야 했던 고약한 期입니다.

玉武錫：소위 社會的 四柱를 잘못 타고난 세대이군요. (웃음)

李泰魯：저는 占은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이 출생년월일 가지고 운세를 따지는 것도 전혀 근거가 없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어느 해 태어나면 역시 공동으로 고생을 겪는 수가 있지요. 덕도 보는 경우가 있겠고….

安慶峰：지금 법대분위기를 보면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대부분이고, 안하는 학생이 오히려 少數일 것입니다. 지금 학생하고 그 당시의 학생들하고 비교를 해 주십시오.

李泰魯：분위기가 전혀 다르지요. 오늘날에는 학부시절부터 기업에 갈 사람, 행정을 할 사람,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전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전공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본래 자기 전공을 졸업후에도 살려야 생산성이 있는 교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법을 공부하는 이상 그러한 법에 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스러운 것입니다. 옛날하고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

금은 합격인원도 삼백명가까이 되기 때문에, 대여섯 사람을 뽑을 때와는 달리, 射倖的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학부시절에 지나치게 司試에 집착해서 학부교육에 악영향을 주는 그 점이지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강구되어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시지요.

미국에서의 유학생활

玉武錫：留學은 몇년도에 가셨습니까?

李泰魯：55년 12월입니다.

權光重：留學을 가시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또 留學을 가셔서 어느 학교에서 공부하셨는지요?

李泰魯：留學이란 것도 그렇습니다. 留學갔다 와서 무잇이 될 거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때로 보면 대학교수의 신분이 참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감히 나같은 사람이 대학에 들어올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도 대부분의 공부를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은 留學들을 가기 때문에 따라서 간 것입니다. 그 때 우습게 된 것이, 원래 테네시주의 밴더빌트대학 法科大學의 입학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留學비자를 받았습니다. —그 때 밴더빌트대학의 학장이 John W. Wade라고 法學敎育界에서는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그 분이 그 때 굉장히 친절하게 입학허가를 해 주었고, 내가 계속 기일을 연기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받아주셨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상당히 좋은 학교이었습니다. 그 뒤에 校勢가 기울었다가 근래에 와서 再起하고 있습니다—미국으로 떠날 때에 중학교 1년후배하고 함께 떠났는데,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해서 함께 버스로 동쪽을 향해 갔습니다. 그 친구는 일리노이 남쪽에 Southern Illinois에 입학 허가를 받아서 거기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입학원서는 몇군데 것을 받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거기에 내리갈래, 그 친구 혼자 있기 뭣하다고 해서 같이 있자길래 그만 중간에 내려서 그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밴더빌트대학은 못 가고, 남일리노이대학의 상과대학 학부를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국사람들은 商科라고 하는 것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法學을 해 보아야 장래가 막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취직자리가 마땅치 않고, 1932년생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해가 아니었지요. 세계적 大恐慌의 絶頂이 1932년입니다. 쭉 국민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전쟁기를 통해서 다닌 셈입니다. 본래 관료에는 뜻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면 기업에 취직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전후의 經濟復興에 새로운 經營技法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교차로에서 어느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이 전 생애를 통해서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제가 法科大學에 교수로 다시 왔지만, 그 때 생각으로는 사업을 할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때 뜻대로 했으면 지금쯤 밥굶고 있을런지 모르지요. (웃음) 상과대학 3학년에 편입을 해서 배웠는데, 요새 留學生들이야 많은 예비지식을 가지고 가지만 우리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대로 대학을 다녔다고 할 수가 없지요.

安慶峰：미국 상과대학의 curriculum은 어떠했습니까?

李泰魯：거기서 3학년으로 편입하고 보니까 교육 내용이 다른 지식이 있는 것을 전제로 가르치고 있는데, 저에게는 그 전제가 없지요. 그 당시에 IBM이라고 하면 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압니까. 무엇의 약자인지도 몰랐어요. 그 때 한참 IBM이 기업성장 모델의 연구대상이 될 때이었습니다. 나로서 쉬웠던 것은 商業數學하고 會計學이지요.

이것은 특수한 사회적 배경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계산하는 것이니까 세계 공통이지요. 다른 것을 알아듣기도 어려웠고, 또 마케이팅의 판매기법(salesmanship) 같은 것들은 고객이 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상품을 파는 그러한 모의시범같은 것을 하거든요.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물건을 파는 시늉을 하나요? 그런 것을 할 때는 이런 것이 공부인가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경영학을 계속했더라면 아마 會計學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상과대학을 졸업했고요. 2년내에 학부를 끝냈습니다. 會計學 선생은 Willkinson이라고 여자선생인데, 체구가 자그마한 동양인이 와서 답 하나 틀리는 일이 없고 해서 나를 신통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會計理論쪽으로 가면 法學하고 닮은 점이 많거든요. 논리적이고 나중에는 개념유희같은 것도 많고요. 經濟學에 비하면 經營學은 학문적 성격은 좀 열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학을 하시는 분이 들으면 반박을 하시겠습니다만 역시 그것은 응용분야이고 실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한국에서 法學을 전공했었으니까 미국의 法學은 어떤가 해서 Columbia 법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백화점의 이 물건, 저 물건 구경하듯이 왔다 갔다 한 것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Columbia대학의 比較法碩士課程을 했지요. 그런데 사실 나중에 Yale에도 갔었지만 학교는 Columbia가 훌륭한 학교입니다. 교수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Yale이 물론 상아탑적인 분위기는 뛰어납니다만, Columbia는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해서 商事法분야는 특히 뛰어납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 과목, 저 과목 들었습니다만 감명깊었던 것은 역시 憲法이었습니다. 살아있는 憲法이니까요. 요사이 우리도 憲裁 설치를 계기로 해서 憲法이 우리 일반생활까지 직접적으로 연관을 갖는 법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美國憲法이야말로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법이지 결코 먼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보면 설득력, 깊은 사려에 감명을 받았고, 비교적 非技術的인 분야이기 때문에 외국사람이 이해하기에 좋았습니다. 한편 제가 商事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商事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William L. Cary 교수가 당시 회사법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 분은 학문도 대단하지만 인품도 역시 대단합니다. Wolfgang Friedman 교수가 法哲學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겐 잘 안 알려져 있지 않지만 John G. Palfrey라는 분이 經濟法을 강의하셨는데, 나중에 미국의 원자력위원회 위원장도 지내셨습니다. 지금 Columbia 대학총장직을 맡고 계시는 Michael I. Sovern 교수는 원래 勞動法 전공인데, 우리에게 법일반이론을 가르쳐 주시었지요. 그 때는 그 양반이 아주 젊었을 때입니다. 그 때부터 그 분은 才氣가 번뜩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훌륭한 교수들이 많이 계셨지요.

玉武錫：선생님께서 처음 稅法을 접하신 것은 언제입니까?

李泰魯：Yale로 가서 그 때부터 稅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稅法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稅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稅法에 관심을 두었다고 한다면 조금 우스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때에 세금이 별로 있었어야지요. 제도는 물론 있었지만 외국원조에 80~90% 의존할 때였습니다. 조세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살 그럴 때가 아닙니다.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않는 나라의 사람이 와서 稅法을 듣고 하니까—지금 보면 그것이 당연하지만—그 때로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그 시점에서 보면 조금 황당한 착상입

니다. 세금에 대해서 예비지식이 있어야 이해하지요. 稅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玉武錫：선생님이 처음 세법을 접하셔서 공부한 세법교재와 은사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李泰魯：그 때 교재로는 Little, Brown & Co.에서 나온 Boris I. Bittker교수의 Federal Income, Estate and Gift Taxation이라고 한 권에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상속·증여세에 관한 것이 다 들어가 있는 casebook입니다. Boris I. Bittker 교수는 미국에서 단연코 稅法의 一人者이며 바로 그 분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미국사람도 역시 어렵다고 하는 것이 稅法이거든요. 특히 法人稅法 같은 것은 지금 보아도 어렵습니다. Yale이라는 데가 조금 특수한 교육방법을 택하고 있는 학교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상당히 法學敎者에 대해서 전통적인 교육보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경향이 짙었고, 또 Yale출신의 상당수는 교육계로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Columbia출신들이 대부분 실무계로 빠지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Harvard는 그 중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玉武錫：새로운 傾向이라고 하는 말씀이 소위 學際的 接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李泰魯：우리가 지금 말하는 학제적 연구방법이지요. 정책론이 가미된 학제적 연구지요. 그 새로운 흐름에 선봉을 걷고 있었던 분이 Myres S. McDougal교수와 Harold Lasswell교수이었고, 소위 policy science라고 해서 法學을 정책학적으로 형성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 분들의 필생의 이 연구성과가 금년에야 Jurisprudence for a Free Society: Studies in Law, Science, and Policy라는 제목으로 간행됩니다. 또 경제법, 형법을 수강하였는데, 경제법이나 형법은 정책학적인 성격을 상당히 띠었고, 가족법까지도 그러합니다. 가령 제가 형법을 법대에 다닐 때에 劉基天선생님한테서 들었지요. 그 때 들은 강의하고는 pattern이 전혀 다르지요. 물론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도 있지만, 아예 그런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미법도 과거에는 그랬었다고 생각이 안드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범죄의 개념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토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당시에는 대부분의 州에서 同性愛는 하나의 범죄였지요. 병이냐 범죄냐에서부터 토론을 하게 되니까 의학적인 글도 보고, 법률적인 문헌도 보고 판례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 입니다. 어떠한 점에서 反社會性이 있는지도 확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선생님들이 모든 논점에 대한 명쾌한 결론을 주시고 그래야만 훌륭하게 보이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결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질문만 던져 놓고 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목을 끝내도 무엇인가 정리가 안되는 흐트러진 산만한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주고 그러나 생각은 많이 하게 하는 그런 강의만 했습니다. 미국 교수들한테 놀란 것은 전공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과목들을 동시에 하면서도 훌륭히 해 내는데, 형법을 가르친 Richard Donnelly 교수는 가족법에서도 같은 approach를 쓰는 것이지요. 婚姻 같은 문제도 우리는 순전히 법적인 측면만 따지게 되는데, 이성간의 인간관계의 측면을 아울러 고찰한다든가 하는 學際的 approach라든지 정책적인 approach라든가 그런 학풍을 접했다고 하는 것이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玉武錫：그 당시 그러한 방식을 사용해서 강의를 할 때에 선생님들이 그러한 방식을 學際的 硏究方式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면서 그런 낱말을 사용해 가면서 강의를 하시던가요?

李泰魯：당시 그런 낱말을 내놓고는 안 썼지만, 가령 경제법은 유명한 Walt Rostow

의 동생인 Eugene V. Rostow 학장께서 가르치셨는데, Richard Bowman이라고 하는 경제학자하고 같이 가르쳤습니다. 經濟學者와 法學者가 공동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반부, 후반부 part 나누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함께 나와서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보아도 같이 interdisciplinary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바로 그 현장임을 알 수 있지요. 獨禁法에서 monopoly라고 하는 개념은 경제적 개념이지 순수한 法學的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monopoly라고 하는 것을 大企業만 생각하지만 동네에 grocery 하나밖에 없으면 그 자체로 monopoly하는 것입니다. 零細商人이라고 해서 monopoly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 동네에 조그만 grocery 하나밖에 없고 다른 곳에 가려면 자동차로 한시간 가야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monopoly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과점이다 독점이다 하는 개념자체를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하지요. 독과점에 대한 통제, 경제적인 효과도 분석을 해야지요. 왜냐하면 어떤 것은 우리가 일부러 독과점을 조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력, 수도, 통신, 철도 같은 것은 독과점형태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낭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經濟法을 經濟學과 분리시켜서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분이 와서 가르치셨는데, 이게 고등경제학을 동원하는데 우리가 어디 대학을 제대로 다녔어야지요. 미국의 Law School이라고 하는 것은 undergraduate background를 가진 학생들이 오는 곳 아닙니까. 그 과목을 듣는 친구들 가운데에는 경제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상당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때는 대학교수가 대단한 것이어서 감히 나로서는 생각을 못했고, 당시 우리 경제가 take-off한 초기단계이었으니까 내가 일찍 돌아왔으면 조금 쓸모가 있었을런지도 모르지요. 그 때에는 經營學과 商事法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귀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 왔으면 여러분아닌 다른 사람을 만났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웃음)

학문활동의 시작

李哲松：공부 끝내고 귀국하신 것은 60년대 초반이지요?

李泰魯：1963년 10월에 돌아 왔습니다.

李哲松：서울대학 부임하시기 전에 미국에서도 직장생활을 하셨지요?

李泰魯：귀국하기 직전까지 미국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장은 Bancroft & Whitney Company라는 법률출판사입니다. West Publishing Co.와 함께 미국의 양대 법률서적출판회사인 Lawyers' Cooperative의 子會社입니다. 거기서 legal editor 근무를 했었고, 내가 했던 일은 텍사스 법률백과사전의 편찬위원으로서 원고를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Lawyers' Cooperative에는 후일 아세아개발은행의 법무이사를 지내신 鄭天約 박사가 계셨었지요. 당시에는 동양인에게 취직자리가 귀했어요. 마침 미국에 劉基天선생님이 오셔서 만나자는 전갈이 왔고, 만나 뵈었더니 학교에 올 의사가 없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때 劉선생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대한 애정이 워낙 컸고, 그 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전부가 학문과 학교의 발전을 위한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때에도 法科大學과 당시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司法大學院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 분 나름대로의 의욕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사람이 필요하니 오지 않겠나 하셔서, 나로서는 매우 귀한 기회였기 때문에 두말없이 받아 들였고, 지금도 그 분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귀국하기로 결정해서 1963년 10월에 돌아 왔습니다. 요사이하고는 달라서

발령이 나기 전에 바로 학교일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무렵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된 후 아직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것을 기다리느라고 64년 4월에 비로소 전임강사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때부터 바로 司法大學院과 法科大學 양쪽의 강의를 맡았고, 또 동시에 法科大學의 도서관에서 도서관의 개선을 위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대도서관장의 보직을 동시에 맡았습니다. 그 때 가르친 과목은 여러가지였지요. 稅法 이외에 司法大學院에서는 방문교수이었던 플로리다대학의 Roy Hunt교수, 알리바마대학의 Jay Murphy교수, International Legal Center에서 파견되었고 현재 뉴욕인방지방검사로 근무하고 있는 Bernard Fried, 그리고 역시 International Legal Center에서 보냈던 David Phillips(후일 Boston대학교 法科大學 교수가 됨)와 같은 분하고 美國憲法도 함께 강의를 했습니다.

李哲松：오셨을 때 年歲가 얼마였습니까?

李泰魯：우리 나이로 32세였습니다.

李哲松：제가 67년 입학하였을 때 도서관장을 하고 계셨는데, 물론 보직은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만, 미국에서 도서관학도 공부하셨습니까?

李泰魯：도서관장의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의 확충을 위하여 그 뒤에 학교에서 公務出張의 형식으로 아세아재단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University of Washington에 1년 修學을 했지요.

李哲松：그러면 귀국하신 후에 근무하시다가 다녀 오셨겠습니다.

李泰魯：65년 가을에서 66년 여름까지입니다.

李哲松：선생님께서는 책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평소 글 쓰실 때 항상 문헌이 정확하신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만, 도서관학을 공부하셔서 그런 것입니까?

李泰魯：정확하지도 않고 문헌을 많이 보지도 않는 사람이니까 李교수말은 오히려 고맙기는 하지만 정확한 것 같지는 않고…. 사실은, 나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항상 자신이 없습니다. 李교수하고 회사법책을 共著로 내면서 늘 李교수한테 하는 말이 있지요. 독창적인 것을 주장할 때에는 깊이깊이 생각하고 주장하라, 그 동안에 수많은 碩學들이 오랜 세월 거쳐간 분야에 그 사람들이 못 본 것을 내가 쉽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벼운 행동이다라고…. 그것은 무엇에서 연유하느냐 하면 내 자신이 내 자신에 대해 믿음이 없다 보니까, 따라서 내가 하는 말은 항상 남이 한 말에 기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마침 나와 생각이 같다든가, 그 분의 생각에 共鳴이 된다든가 하기 때문에 그러한 典據를 인용할 따름입니다.

李哲松：요즈음은 법률학분야에 워낙 국내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 문헌이 점점 방대해지고, 따라서 문헌을 정리하는 일 자체가 큰 작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圖書館學까지 공부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入門정도의 감각을 가지는 것이, 사실은 오랫동안 학문을 취급하는 사람으로써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李泰魯：아시다시피 미국의 法科大學의 1학년으로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의 하나가 legal research과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심지어는 대학원에서조차도, 거치지 않고 논문작성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형식의 통일성이라든가 또는 자료수집 방법이라든가 이용이라든가 하는 면에서 애로와 혼란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러한 교육은 적어도 학부의 상급반이나 대학원에서 꼭 가르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李哲松：선생님은 주로 稅法, 會社法의 분야를 연구해 오셨는데, 會社法도 물론이지만, 稅法의 기초가 상당히 방대하지 않습

니까? 법 안에서도 여러 분야의 것이 걸립니다만, 경제다 회계다 하는 법학이외의 분야도 다 관련되어 있어서 다루기 힘든 분야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경제학도 공부하셨고 회계학도 공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시기였습니까? 다른 코스에서 공부를 하셨습니까?

李泰魯：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와 중복이 되는 이야기이군요. 상과대학을 다닌 것이 기초가 되었고, 법대에서도 경제법 분야와 같은 데 있어서는 단순히 법적 접근뿐만 아니라 경제학적 접근과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그런 측면에 접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租稅制度論에 관한 견해의 표명은 되도록 삼가하고 있습니다.

李哲松：지금도 역시 稅法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공부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경제, 회계와 같은 분야는 극히 기초로서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해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李泰魯：經濟學은 어차피 인문·사회 특히 사회과학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교양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학에 대한 기초는 많은 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은 會計學이지요. 그것은 특별히 선택해서 듣지 않으면 안되는데, 회계학의 기초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계는 하나의 논리체계입니다. 거기에는 비교적 예외가 없습니다. 나중에 會計理論으로 가게 되면 개념적인, 추상적인 것이 있지만 會計原理단계에 있어서는 지극히 과학적입니다. 貸借對照라고 하는 것은 좌우변이 완전히 끝자리 1원까지 동일하여야 balance가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반대측면이 있다는 것, 그렇게 해서 서로 equation이 이루어져서 平衡이 된다는 것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회계학이라고 하는 지식뿐만 아니라 思考에 있어서 균형감각같은 것을 얻게 되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행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것이, 즉 항상 반대측면이 있고, 이러한 자기의 행동이나 행위를 하면서 반대측면을 아울러 생각하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balance에 대한 감각같은 것이, 하나의 좌우명이나 규범으로서 인식한다기 보다, 감각으로서 터득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규범으로서 인식되면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지만, 자기 감각으로 발전되면 자기도 모르게 잠재적으로 충실히 따르게 된다고 하는 점이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複式簿記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큰 발명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적어도 회계원리단계에서는 학문적으로는 단순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용한 분야입니다.

세법강좌개설

李哲松：64년도부터 서울대에서 근무하셨으니, 稅法강의를 시작하신 것도 64年度시군요.

李泰魯：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바로 稅法을 담당했는데, 제가 놀란 것은 司法大學院과 法科大學의 curriculum 속에 稅法과목이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가르치겠다니까 넣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까지 그 과목이 개강된 적은 없었습니다만 curriculum 속에는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진취적인 curriculum이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그때가 64년인데, 64년이면 제 1 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조세부담이 국민에게 그다지 짐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租稅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았었고, 심지어는 나중에 국세청이 발족할 1966년만 해도 국세청의 "의욕적인" 稅收목표가 700億원에 불과했습니다. 목표 달성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국세청장 관용차의 번호도 700으로 하였지요. 지금은 작년만 해도 30兆원 이상 걷혔습니다. 稅法에 대한 인식 또는 필요성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별로 절실히 느끼지 않고 있을 때에 이미 개설했다는 것은 대단한 先見之明이라 하겠습니다. 지금도 어느 분의 주장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 지는 모르나, 金道昶 선생님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李哲松：당시 稅法에 대한 인식이 그러했다고 말씀하셨듯이 그 때에는 국내에 稅法에 관한 책이 별로 없었고, 稅法하는 사람 자체가 드물었고, 한 마디로 개척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대학에서 稅法을 개척해 놓으신 것은 분명하고, 모두들 우리나라 稅法의 틀을 잡아 놓으셨다고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세법에 대한 인식이 대단하지 않아서 고생하셨으리라 짐작이 되는데, 처음 개설시 학생수는 얼마였습니까?

李泰魯：처음에 司法大學院에서는 상당수가 들었습니다. 물론 司法大學院의 각학년의 숫자는 일정치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다섯명밖에 없을 때도 있었고, 권광중판사가 다닐 때는 32명, 어떤 때는 80여명,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숫자보다는 비율이 중요하지 않나 싶군요. 그런데 반수정도는 들었습니다. 그것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실 나 자신 稅法의 강의내용에 대한 구상이 확립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강의내용이 굉장히 平易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실무자체가 상당히 未啓發 단계이었습니다. 요새 와서는 불복사례를 보더라도 불복인의 주장이 상당히 이론적으로 정교합니다만, 그 당시의 세무행정이 하여간 초보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강의내용도 평이했고, 또 사실은 우선 많은 사람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역시 중요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가끔 내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기술적인 내용은 얼마 지나면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기억나는 것은 기억 안 날 것이다라는 말만 기억날 것이다'라는 말을 합니다만, 그래서 세부적인 기술적인 이야기보다도 稅法의 중요성이라든가, 또 稅法理論上 관심을 끌만 한 대목을 골라서 학생들이 그 분야에 흥미를 갖도록 노력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權光重：제가 司法大學院시절에 선생님의 세법강의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래 법조계에서도 세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유익하게 쓰일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데에 대하여는 모두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제가 선생님의 세법강의를 듣다가 인연이 되어 사법대학원 시절내내 선생님의 연구실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 후 선생님지도아래 稅法分野 碩士學位論文(損益의 歸屬時期, 1970)을 쓰게 되었습니다.

李哲松：선생님 문하생모임인 稅法研究會 명단을 보면 회장으로 계시는 權光重部長判事가 석사학위 제1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이 李永馥 辯護士, 朴完圭 部長判事 이런 순으로 내려가고, 저하고 鄭東旭 部長檢事하고 동기입니다 4번째, 5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때 정동욱검사하고 저하고 둘이 선생님강의를 듣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처음 가르쳐 주신 것이 '實質課稅原則'이었습니다. 지금도 실질과세원칙에 관해서 논문을 쓰려고 하면 안개속을 가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문제인데, 그나마 그 때 매우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實質課稅

에 관해서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 때의 감각을 활용합니다만, 지금은 稅法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李泰魯：대학원에서 稅法강의를 듣는 학생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 혼자로서는 다 맡을 수가 없어서 張在植박사가 강사로 나와 주시고, 양쪽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수를 double count를 하지 않고 대개 20여명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稅法을 전공하는 학생도 매년 5,6명정도 배출하고 있습니다.

세법학계의 흐름과 立法文化

李哲松：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아직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분도 꽤 많은데 그 분들이 세무소송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당시는 국내문헌도 별로 없을 때인데, 稅法을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稅法에 관한 논문을 여러편 쓰시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租稅法律主義에 관해서 길지는 않지만 명쾌한 결론을 내린 글을 쓰신 것도 있고, 기타 여러가지 글이 있었습니다. 당시 어떠했습니까. 우리나라 일반적인 학계의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李泰魯：지금은 이 분야의 인구도 늘어났지만 그래도 타분야에 비하여 활성화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분야인데,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참으로 이야기를 나눌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아무도 닷하지 않고, 좀 그럴듯한 말을 해도 칭찬해 주지도 않고, 이런 메아리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적으로도 고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稅法은 누가 보더라도 실용적인 분야이고, 응용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역시 실무에서 稅法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것이 어떻게 운영, 집행되느냐 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실무하는 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李哲松：요즈음은 稅法專門雜誌도 많고 기타 법률잡지에서도 얼마든지 稅法을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稅法공부하는 사람들이 원고료를 받고 글을 쓸 기회도 많습니다만 옛날에는 참 고달펐군요. 어저께 申贊秀회계사님께서 과세소득관계논문을 쓰시면서 선생님께서 쓰신 「課稅所得槪念에 관한 硏究」를 많이 참조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논문이 學位論文입니까?

李泰魯：사실 잘 쓴 글이 아닙니다. income concept는 여러 분야에서 다루는 것 입니다. 경제학에서도 income concept가 문제가 되고, 회계학에서도 income concept가 문제가 되는데, 이 쪽의 자료를 충분히 종합해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쪽에서 소득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과세할 수 있는(taxable) 소득이냐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척도를 가지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점에서도 부족했습니다.

李哲松：요즈음 稅法學界는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보시기에 세법을 공부하는 인구도 많이 늘었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복의 이유도 상당히 精緻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크게 나누어서 입법은 어떠한가, 지금의 학계라든지 실무계에서 나아가는 방향은 어떤가 하는 것등을 참고로 말씀해 주시지요.

李泰魯：稅法의 입법과정을 보면 어느 나라나 대충 정부제안에 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법안이 수립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국세의 경우 재무부 세제실의 요원이 중추가 되어서 만듭니다. 물론 세제심의위원회라든가 그밖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委員會나 部외의 전문가의 기능,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직접적이지 못합니다. 행정부의 요원들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제약이 있습니다. 첫째 인사이동에 있어

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오랜동안 하나의 분야를 깊이있게 연구하는 사례가 우리나라에는 드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관심이 그때그때의 時事的인 문제에 집착되어 거기에 대한 대책만 만들다 보니까 전체의 내용이 조화나 체계를 缺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의 법인 이상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전문가가 직접 다루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실제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교육배경은 오히려 비법률분야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많은 해석상의 혼란, 체계상의 상호모순같은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회부된 연후의 심의 과정은 상당히 정책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부각되는 쟁점—가령 稅率이나 勤勞所得稅의 所得控除額을 어떻게 한다든지—에 국한되고, 그것이 집행과정에서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국회의원은 기술적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 스스로 검토할 시간적 여유나 또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요. 그래서 專門委員과 그 陣容이 이름 그대로 專門家에 의해서 보완, 충실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哲松：아까 會計學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균형(balance)감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가령 法人稅法의 不當行爲·計算否認같은 것, 이 쪽에서 損金否認을 해 놓았으면 저 쪽의 받은 사람쪽에 가서는 益金으로 不算入해야 할텐데, 그것은 또 對應調整이 안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사실은 균형감각이 결여되어 있는 입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李泰魯：한 쪽에서 인정했으면 다른 한 쪽에서도 같은 사실을 인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국가는 중복과세의 不當利得을 취하는 결과가 되어 버리는 점이 있습니다.

李哲松：결국 그러한 것은 立法의 文化라고 이야기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李泰魯：그렇지요. 사물을 생각할 때에 어떠한 처리를 하는 데 대한 波及效果까지 아울러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사물에 대한 사고가 상당히 단조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이 났으면 그 불 끄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물을 마구 부어대면 다른 것이 어떻게 되느냐도 생각이 미쳐야 하겠지요. 생각이 깊어야 할 텐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미숙이 稅制에도 나타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代表者認定賞與만 하더라도 대표자인정상여로 해서 社外流出된 재산이 代表者에게 귀속되었다고 간주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회사에서 빠져나간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값어치는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대표자가 동시에 대주주라고 할 때, 그 사람은 회사자산이 유출되어 자기에게 귀속되었다고 해서 과세가 되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의 소유주식의 가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전체적인 富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귀속되었다고 인정되는 금액전액이 아닙니다. 자기 주식의 가치감소를 minus(−)한 차액이 실질적인 소득입니다. 다시 말하면 A, B, C 주주가 있는 회사에서 A가 대주주인 동시에 代表理事라고 하게 되면 代表者에게 認定賞與로 所得處分하고, 그래서 과세할 때 우리는 賞與로 귀속되었다고 하는 금액전체를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에는 A, B, C 중에 자기가 A인데, B, C의 몫이 자기한테 온 것이 있고, A자기 것이 자기한테 온 것이 있지요. 극단적으로는 1人會社의 資産이 전부 이전되면 회사는 껍질이 되고 주식의 가치는 휴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자산이 통채로 주주에게 社外流出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부 소득이라 할 수 없고, 사안의 본질은 오히려 淸算문제입니다. 청산문제라고 하게 되면 통상의 소득문제보다도 資本利得

문제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單面的 또는 일방적 관찰이라는 결함에 있어서 對應調整문제와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쪽의 자산이 감소하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관찰해야지 법인은 법인이다. 개인은 개인이다. 별개의 인격이다라는 형식적 이야기만 한다면 實質主義라는 것을 크게 명제로서 표방하고 있는 것과 모순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과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세권자에게 편리한 대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법학의 발전방향

李哲松：입법은 그런 상태입니다만 법의 해석과 집행을 포함해서 학계와 실무계가 지금 어떤가, 稅法學이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선생님의 의견이 있으실텐데 듣고 싶습니다.

李泰魯：지금 法曹界와 稅務會計쪽에서도 여러 분들이 훌륭한 글들을 써 주고 계시고, 稅法學界에서도 점차 그 수가 늘어 좋은 글을 써 주고 계시고, 재정학분야에서는 중견층이 많이 생겼지요. 이런 분들이 여러 기회에 자주 만나서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인접분야를 많이 가지고 있는 稅法의 발전에 상당히 촉진제도 되고, 활성제도 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稅法硏究會」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稅法硏究會」의 구성원들의 활약에 우리나라 稅法의 발전이 힘입는 바가 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현재의 사회적 지위나 지적 활동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 稅法과 稅法學의 장래가 촉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묘한 것은 우리 연구회가 다른 연구회와는 달리 旣成人 가운데에서 전공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대학원재학중에 稅法을 전공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會임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그 분들의 사회적 진출을 보면 놀랍도록 성취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같은 전공을 했다고 해서 전부 모여 보면 그 가운데에서는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성공한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는데, 稅法을 전공한 분들은 예외없이 다 그처럼 잘되어 있는 것이 신통하고, 그것은 일찌기 재학당시부터 稅法의 重要性을 인식하는 현명한 안목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현재 稅法에 대한 기여는 괄목할만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자꾸만 숫자가 늘고 있고, 그 분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활동을 할 미래가 長久하고, 그 업적이 점차 축적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희망찬 장래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李哲松：워낙 權光重會長님께서 잘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두달에 한번씩 모이는 稅法硏究會에서 논문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고, 토론하는 모습도 매우 활발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稅法硏究會 회원들이 전부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稅法을 전공하면 자기 분야에서 성취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가 되겠군요. (웃음)

李泰魯：稅法의 발전방향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의 연속이 되겠습니다만, 李敎授도 국세청의 심사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많은 사건을 매주 보고 있어서 알다시피 조세분쟁의 내용을 보면 사실인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제는 會計的이라기 보다는 法的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90%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賦課 내지는 徵收節次上의 문제점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課稅要件에 관련된 것이라서 稅法을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두어야 할 분야는 課稅要件法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과세요건법이야말로 稅法學의 고유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租稅刑法은 형법하시는 분이, 租稅行政法은 행정법을 하시는 분이, 또 租稅法律主義와 같은 지도이념은 헌법하시는 분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稅法하는 사람만이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課稅要件法입니다. 그런데 그 과세요건법만 해도 굉장히 범위가 넓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는 미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중점적으로 많은 분들이 많은 연구를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李哲松：課稅要件法이라고 하면 民法, 商法 등 私法분야와 긴밀한 관련을 갖겠군요.

李泰魯：私法的 側面하고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課稅物件이 私法上의 去來나 法律效果에 연유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私法에서 借用된 槪念이라든가 이론도 있겠지만 稅法 固有의 理論도 정립되어야 할 분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의 발전이 稅法學을 참답게 살찌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법해석학의 방향

李哲松：입법을 아무래도 행정부에서 主導하다 보니 그때그때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속위주의 입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稅法분야가 다른 법분야보다는 명백한 기술적 오류가 많은 분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租稅法律主義하에서의 嚴格解釋의 原則때문에 그러는지 稅法의 해석이 조금 경직되게 이루어지다보니까 입법적인 오류 같은 것이 그대로 무자비할 정도로 고지식하게 집행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私法 같으면 우선 입법과정에서 오랜 시간 연구하니까 오류가 적은 편이고,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合目的的 解釋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稅法의 해석 특히 과세청쪽의 해석이 文理解釋에 치중되는 인상이 있습니다. 稅法解釋學의 바람직한 방향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李泰魯：어쩌면 李敎授가 질문한 배경에는 근래 論難의 대상이 되었던 일련의 재벌그룹에 관련된 과세를 염두에 두고 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租稅法律主義와 稅法解釋에 있어서의 實質主義의 限界와의 갈등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實質主義는 稅法의 解釋이나 課稅要件事實의 認識에 있어서 적용되는 원칙이고, 租稅法律主義는 헌법상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가 충돌할 때에는 역시 租稅法律主義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냐, 바꾸어 말하면 實質主義는 租稅法律主義의 한계내에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稅法이 租稅法律主義의 테두리 안에서 해석된다고 해서 꼭 文理解釋만이 허용된다는 것은 아니고, 目的解釋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목적해석을 함에 있어서도 文理가 분명할 때에는 목적해석의 여지는 많이 줄어들겠지요. 租稅法의 특수성은 국민의 대다수인 납세자가 그러한 실정법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납세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文理的으로 명백한 내용을 믿고 한 행위나 신고를 나중에 합리적이 아니라고 뒤집는다면 우리 경제 생활의 豫測 可能性이나 法的 安定은 어떻게 됩니까? 합리성이라든가, 租稅正義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이 개재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正義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이 개재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正義라고 생각하는 것을 정의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의도 사람마다 다른 것인 데, 이른바 합리성이나 정의의 명분을 내세워서 변형시킨다면 조세행정의 대량반복적 특성에 비추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겠지요. 混亂은 亂亂을 수반합

니다. 납세자상호간에도 생각이 다르고 과세권자는 과세권자대로 國庫主義에 흐르고, 과세청내에서도 담당자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하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후에 법령을 개정해서 치유할 일이지 해석단계에서 지나치게 그 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은 近視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지만 大乘的 안목에서 보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역시 嚴格하게 解釋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稅法의 특이한 점은 다른 채권·채무관계와 달라서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만든 約款대로 되는 것이 租稅債權債務關係입니다. 일반 사법상의 채권채무관계라면 양자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데, 조세는 양자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는 그 내용을 마음대로 고칠 수 있습니다. 물론 政治的 理念으로는 主權者인 國民과의 관계에서 민주적 입법과정에서 代表者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나, 어떻든 債權者인 國家에 의해서 稅法이 만들어집니다. 자기가 자기의 권리를 이를테면 임의로 형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매하게 만들어 놓고, 애매한 것도 아니고 文理的으로 분명한 데도 불구하고, 국민이 文理的으로 분명한 길을 따랐을 때 그것은 내가 뜻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해서 사후에 옳다고 생각하는 해석을 내 놓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가를 省察하여야 합니다. 실제 국가는 개개 납세자보다 훨씬 월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월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월등한 해석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오히려 민주적인 조세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생각은 租稅法律主義에 의한 解釋의 限界라고 하는 것은 納稅者保護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課稅權者保護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납세자보호와 관련없는 분야나 쟁점에 관련된 법령에 있어서는 다른 일반법령해석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類推도 가능할 것이고, 擴張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租稅法律主義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租稅法律主義를 어떨 때는 가령 법령상 과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課稅權者의 言動으로 인해서 信義則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信義則과 租稅法律主義의 대립의 문제로 보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즉 법에 적혀진 대로 하는 것이 租稅法律主義라고 쓰여진 글들을 가끔 접하는데, 租稅法律主義의 發源이나 發展過程은 그것이 아닙니다.

李哲松：納稅者保護의 側面에서 이해하니까 간명해지는군요.

安慶峰：租稅法律主義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납세의무자 상호간의 水平的 公平내지 垂直的 公平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擔稅力의 척도를 여러가지로 보는데, 所得이 있으면 과세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문제는 所得이 있다 하더라도 稅法에 있어서는 私法上의 거래형태에 따라서 과세하는 데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현안이 되고 있는 것들이 세법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거래형태를 취해서 사법상 거래했기 때문에 그것을 세법상 어떻게 규제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泰魯：재정학적으로 보면 所得이 있으면 課稅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위이겠지만, 법적으로는 課稅할 法律이 있어야 課稅할 수 있는 것이 當爲입니다. 그리고 지금 所得稅法은 法人稅法과 달라서, 法人稅法이 純資產增加說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 所得稅法은 역시 하나의 입법형식으로서는 소득원천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되지 아니한 소득은 稅法으로부터

自由로운 所得이고 이것은 오히려 免稅나 非課稅보다도 더 과세권이 행사될 수 없는 대상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인 데, 動產의 양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기로 했으면 과세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종의 脫法 내지는 租稅回避의 수단으로 그러한 경로를 취했다면 문제는 다르지요. 법이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법은 분명히 특정분야에 있어서 어떠한 租稅負擔을 輕減할 수 있는 길을 선택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고, 또 그러할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길을 취하는 것은 입법시에 예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로서는 그러한 법의 테두리안에서 선택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비난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법자가 스스로 선택권을 부여했는데, 그 권리의 행사를 비난할 것은 아니지요. 租稅減免規定은 납세자를 적극적으로 조세부담이 적은 길로 유인하고도 있습니다.

조세구제절차

李哲松：국세심판소의 비상임심판관을 패오래 하셨지요? 70년대말부터 약 14년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일을 그렇게 오래 하시기 힘든 일인데, 심판관을 하시면서 느끼신 바가 많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세상의 한 단면을 보시는 측면에서도 좋고….

李泰魯：國稅審判所가 창설된 것이 1975년인가요? 그 때 국세기본법 법률규정을 보면 '非常任審判官은 公務員이외의 자로서…'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립대학교 교수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비상임심판관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民間代表라고 하는 생각에서 공무원은 배제하자, 이렇게 간단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국세청의 '審査委員'의 자격요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초대 심판소소장을 맡으신 黃厦周선생님이 그 뒤에 집짓 법령을 개정해서 저를 불러 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公務員"이라는 字句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소가 설치된 이태뒤부터 시작되어서 1969년에 미국 1년 다녀올 동안 사임했다가 또 다시 임명되어 오늘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실제 사표도 내었었고 한데, 계속 붙들려서 너무 오래 그 일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제 사건과 부딪힘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거기에다 매주 평균적으로 40건 가량 다루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다룬 사건을 전부 합치면 기만건이 되겠지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참 암기력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다루고는 곧 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잊어버려서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물론 秘密을 지켜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사건들을 통해 비추어진 사회적 단면이라고 특히 지적할 것은 없습니다만, 다만 그때그때의 사회적·경제적인 변혁이 있을 때에 역시 課稅處分의 不服이라고 하는 것이 증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李哲松：社會經濟的인 變革과 不服의 頻度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李泰魯：그러한 변혁의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 또는 또는 새로운 집행방침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일반 납세자가 미처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마찰이 생기는 것이지요. 舊稅가 良稅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의 제도를 바꾸는 것을 立案者는 가볍게 생각하지만 전국민이 항상 조세제도의 개폐에만 관심을 둘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세제도라는 것이 워낙 자주 바뀌고 더구나 무수한 例規나 通牒같은 것까지 본다면 사실 전문가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

들조차 따라가기 어려운 것인데 일반 납세자가 무리없이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종전의 견해와 새로운 견해의 마찰이 생기지요. 제도라고 하는 것은 만들때 신중히 만들고, 가벼이 바꿀 것이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리고 審判所는 구제기관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거기에 참여해서 적지 않은 사람의 救濟에 일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역시 그런 점에서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權光重：租稅爭訟制度와 관련하여 조세사건의 전문성·특수성을 고려하여 特別法院으로서 租稅法院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조세소송의 前審節次로서의 현행 제도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전심절차의 개선의견, 그리고 조세소송사건의 제1심 관할법원을 地方法院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대두,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李哲松：不服前置主義를 취한다고 해서 반드시 고등법원을 1심법원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 불복전치주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지방법원을 1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李泰魯：그것은 제도의 문제이지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前審節次를 사법부의 1심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보아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上訴의 濫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급심판결에 쌍방이 승복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다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高法에서 확정된 사안도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地法을 1심으로 하게되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단계가 너무 중첩적으로 되는 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급심판결에도 승복하는 문화가 있으면, 고등법원에 막바로 가지 않고 地法에서 결론이 나도 무방하겠지요.

李哲松：조세구제절차를 제도적인 측면과 실제 기능하고 있는 측면을 나누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컨대 國稅審査制度도 제도적으로 결못되어서 효율적인 구제제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李泰魯：납세자가 보아서 그러한 처분을 받을 때에는 事前通知다 해서 교섭이 있었으니까 납세자가 판단할 때 도저히 처분청하고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때가 있지요. 그러할 때에는 바로 國稅審判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審査請求단계를 폐지하는 것인데, 심사청구제도가 아무래도 국세청에 소속되다 보니까 구제기관으로서의 한계가 없을 수 없고, 또 國稅廳이 처분청의 상급관서라고 하는 점에서 심리과정에서 당초의 처분청이 알지 못했던 사실까지도 採知할 경우도 있습니다. 不利益處分禁止의 명문규정은 없지만 사실상 불이익변경을 하지 않는 것을 운영의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한 심리과정에서 摘出되는 사실을 가지고 處分廳의 추가처분까지 방지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로 보아서도 심사청구에 거는 기대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國稅審判所가 서울에만 있고 지방분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하려면 심판소도 지방에 분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10여군데 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大田, 光州, 大邱 또는 釜山 해서 3군데 정도는 있어야지, 모든 문제가 서울에 오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세심판소에서 棄却이 되든가 變更이 되어서 거기에 불복을 할 경우, 고등법원은 지방으로 가는데 오히

려 전단계절차인 審判請求는 서울로 와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국세청이 심사기구에 있는 인원, 예산을 심판소로 전용하는 것이 구제도 빨라지고, 납세자의 편익도 도모하고 하는 利點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特利法院인 租稅法院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가 수차 나왔는데, 그것은 조세문제만 따로 특별히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조세가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영역과는 다르기는 하지만, 行政審判制度와 抗告訴訟制度 전반에 관한 문제로써 다루고 그와 함께 租稅法院 문제도 이야기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특별법원을 둔다고 하는 것과 현재의 특별부와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차이가 날 것인가 하는 점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사법제도는 소위 관료제도입니다. 우리의 경우 平判事에서부터 大法官되는 것을 승진단계로 봅니다. 영미제도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대체로 선출되는 것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trial court judge는 그것을 평생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기능입니다. 꼭 승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안되면 탈락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를 자체적인 독자적인 기능으로 봅니다. 그런 제도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租稅法院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인사정책으로 보아서는 조세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판사가 평생을 몸담고 있게 되는 제도이겠습니까? 獨逸의 財政法院같으면 그것은 최고법원의 level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데, 조세법원을 가령 중간단계에 갖다 놓았을 때, 지금 특별부의 운영과 어느 정도 현실적인, 실질적인 차이가 있을런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權光重：제 1 심 행정소송사건중 조세관계 소송사건수는 1981년도에 509건이던 것이 1990년도에는 1,398건으로 증가하였고, 조세소송사건이 행정소송사건의 大宗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대한 법원의 대책으로서 高等法院에 特別部를, 大法院에 特別裁判硏究官室을 두고, 1982년도에 '租稅事件에 관한 諸問題'라는 주제로 법관연수(세미나)도 시행한 바 있는데, 1992년도에도 같은 주제로 법관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세관계판결에 대한 선생님의 소감같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지요.

李泰魯：대법원의 초기판례는 굉장히 단조로왔습니다. 분석이 피상적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념을 혼동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1980년대로 들어오면서 판례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상당히 과감한 것도 있고, 그러면서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세제에 擬制規定이 상당히 많습니다. 配偶者間 또는 直系尊卑屬間 有償去來를 贈與로 擬制한다든가, 特殊關係人간 負擔贈與의 경우 負擔을 인정하지 않는다든가(負擔 portion을 贈與總額에서 안 빼준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원리론적 입장에서 예시적인 것이라고 새겨서 무리한 규정아래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사법부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입법과정상 우리가 신중하지 못한데 대한 보완기능을 상당히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조세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가 상당히 국민의 재산권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이며 아울러 이론전개도 전보다는 향상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유감스럽다고 하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법부, 즉 넓은 의미의 法曹와 學界의 유대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긴밀하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법원에서 조세판례가 행정사건의 과반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조세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사법부내의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玉武錫：이상 말씀하신 것과 관련하여 선생님이 어디엔가 '擬制課稅斜陽'이라는 말로 재미있게 표현하시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憲法裁判所가 생겨서 우리가 주목할만한 여러가지 견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세에 관해서도 憲裁가 몇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李泰魯：憲裁가 조세법령에 대해서 몇가지 결정을 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주목을 받았던 것은 相續稅法 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名義信託의 贈與擬制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내부적으로도 다수의견, 소수의견으로 나뉘어져 견해의 대립이 있고, 그 결정문을 읽은분도 그 결론에 찬동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입장을 취하건간에 이유설시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후에 상당히 혼란을 가져 왔었습니다,

玉武錫：물론 憲裁 내부에서도 名義信託의 贈與擬制규정이 '限定的合憲'이라고 한 결정형식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세법의 기초가 얇고, 거기에 대해 충분히 조언해줄만한 전문적인 층이 얇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저희 稅法硏究會세미나에서도 그 건을 가져오셔서 그 뒤에 국세심판소결정에 적용을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에 그와 유사한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李泰魯：憲裁決定을 보면 '租稅回避의 目的으로 名義信託을 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무슨 조세를 의미하는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贈與稅에 국한해서 말하는 것이지, 심지어 地方稅까지도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인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信託者의 租稅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인지, 受託者의 租稅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인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한 者라든지, 兩者 모두라든지…. 그 다음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회피」와 「포탈」이라는 용어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主觀的 要件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수반됩니다. 그 뒤에 나온 사건을 예로 들면 제 3 자의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그것은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제 3 자명의로 한 것이어서 租稅回避의 意思가 없다라는 식으로 판례가 나와서 구제가 되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이해됩니다. 조세회피도 하고, 農地改革法도 위반하려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세제

權光重：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동산투기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고, "땅, 투기의 대상인가, 삶의 터전인가"라는 단행본도 출간된 바 있습니다. 부동산투기근절대책으로서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각종 토지세제는 과연 적정한 것인가요?

李泰魯：稅制 자체를 다루는 분야가 있어서 그것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중에서도 토지세제는 그 나름대로 분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인 줄 알면서도 제 나름대로의 소박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동안의 세제가 保有課稅보다는 取得과 讓渡에 대한 課稅를 중시했습니다. 그러니

까 토지도 생산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필요한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사람에게 자유로이 이전되어야 하는 것인데, 취득과 처분이 어렵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凍結現象(lock-in effect)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거래자체가 동결됨으로 인하여 가격이 안정된다고 하는 것은 원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볼 때는 목적이 달성된 것이 아닙니다.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사람에게 그 토지가 귀속되어야 하는데, 처분이 어렵게 되면 처분을 꺼리게 되지요. 우리의 양도소득세율은 60%가 최고세율인데, 이것은 일반소득에 대한 최고세율보다 높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 세제를 비추어 보아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양도가액이 100인데, 세금이 50이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현소유자의 토지의 이용효율이 통상의 효율의 50%만 나타나더라도 그는 보유할 誘因이 있습니다. 팔아서 100을 받아서 50을 세금을 내고, 나머지 50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넓은 의미의 경제적 과실)과 비록 저효율적으로 이용되지만 그 토지를 그냥 보유하고 50%밖에 효율을 못 얻어서 갖는 경제적 이익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국가적으로는 잃는 것이 많지요. 또 轉嫁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나타납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때에는 轉嫁현상 때문에 토지가액이 그만큼 올라가고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地價를 형성하게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서 그것이 또 전가됨으로 해서 遞次로 증폭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릅니다.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讓渡稅率이 높은 나라치고 地價政策이 제대로 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파동이 있을 때에 매우 높은 세율을 들이대지만 그 때에는 오히려 공급촉진을 해야할 시기에 양도세를 중과하기 때문에 처방은 잘못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일시적인 충격 효과이지 장기적인 본래의 효과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러한 조치는 자연적인 反落時點과 시간적으로 일치될 때도 있겠지요.

또한 取得費用이 많다는 것입니다. 취득세가 2%이고, 등록세가 3%입니다. 다각은 지방자치단체가 取得에도 징수하고, 登錄에도 징수하는 데, 오히려 등기·등록은 권장해야 합니다. 등록이나 등기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지금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제재를 하고, 또 미등기양도에 있어서는 별도의 제재적인 세율을 가지고서 과세를 합니다. 公簿에 소유권리변동을 등재한다는 그 자체가 담세능력을 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取得을 한 것이 담세능력이 있는 것이지 登記하는 것이 과세계기가 될 수 없습니다. 등기수수료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등록세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등기를 저해하는 그런 작용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취득세를 5%로 하고, 등록세는 없애고 수수료만 받아서 등기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종전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서 과세되었지만, 이제는 실가액에 준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私人간에는 실가액의 70%이고, 法人이 개재되었을 때에는 100%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李哲松：스무번만 주인이 바뀌면 그 재산이 다 없어지고, 열번만 주인이 바뀌면 재산가액의 절반이 없어진다는 계산이 되는군요. 달리 말하면 50%의 가액이 상승한다는 말씀도 되겠군요.

李泰魯：轉嫁를 하든지, 取得費用이니까 어찌 되었든 取得原價로 보아야 하겠지요. 그래서 역시 正道는 保有課稅를 중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유과세의 중과

를 과세당국에서는 상당히 망설여 왔습니다. 요 근래 綜合土地稅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만, 종전까지는 課稅時價準額의 現實化와 稅率의 引上을 꺼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유하는 데 별 부담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遊休를 시켜도 비용이 안 들었던 것입니다. 효율적 이용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유과세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종합토지세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일부 의견은 과세시가표준액이 비현실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보유과세가 무거워지긴 하지만 양도시에 부담해야 할 조세부담이 워낙 크다면 역시 처분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 다른 측면은 保有課稅를 하더라도 현행법과 같이 복잡한 보유과세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가지요. 그리고 保有課稅 累進稅率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業務用土地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에 따라서는 필연적으로 토지가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선, 자동차제조 또는 전국에 지점망을 갖고 있는 은행 이와 같은 것을 종합해서 누진율로 과세한다고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습니다. 특히 法人이 기지고 있을 때 법인은 크다고 해서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법인이 거대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점망을 갖는다든가, 공장을 갖는다든가 토지를 많이 보유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그것을 누진으로 과세했을 때는 이 세제는 필연적으로 租立中立性을 잃어버립니다. 個人의 경우는 과다보유하면 그 사람의 擔稅力이 있으니까 토지의 과다보유라고 하는 측면에서 —개인도 業務用土地가 아니고, 非業務用土地를 말합니다—의미가 있지만, 그것에 대한 累進率重過稅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자치단체별로 독립회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 있고 그것을 능가할만한 이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李哲松：간단히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본다면 取得과 讓渡당시의 과세는 다음 사람에게 轉嫁가 되고, 保有課稅는 土地의 效用이라고 하는 측면에 흡수되니까 토지상의 보유과세는 본인이 회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토지위에서 생산해서 단가를 올린다든지, 서비스요금을 올린다든지 해서 말이지요.

李泰魯：예. 維持를 할수록 불리하게 되면 어떻게든 활용을 할 것이다. 활용을 못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인하되면 처분상의 장애는 없기 때문에 토지를 처분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李哲松：여태까지 30년이상 부동산을 가지고 조세제도가 싸움을 하다시피 했는데, 여기서 어떠한 作用目的的 課稅라고 하는것이, 어떤 정책을 조세로 풀어나간다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李泰魯：租稅의 機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財政需要의 充足에 있는 것이지 그 자체를 가지고 다른 정책목적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부차적인 것인데, 우리가 조세를 일반 정책 수행상의 간접강제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가 할 수 있는 기능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제에서도 宅地의 超過保有에 대한 制裁로써 추가부담을 지운다든가 또는 土地去來許可制度라든가 하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 그 자체는 稅制만으로써 목적달성이 만족스럽게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權光重：선생님께서 空閑地重課에 대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후세도 그 당시 상황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지, 지금 함부로 다 써 버리면, 그 때

필요한 건설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하는 말씀을 듣고 공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李泰魯：우리가 일시적인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 장래를 보지 않는 것은 短見이지요. 土地超過利得稅만 하더라도 건축행위를 상당히 유발하였습니다. 빈터가 그냥 놀았습니까? 테니스장을 했건, 주차장을 했건 무엇이라도 이용이 되었지 서울장안에 그냥 놀고 있는 땅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裸垈地=遊休地라는 等式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법개정

李哲松：작년 연말에 海商·保險法이 개정되었고, 법무부주도로 회사법개정작업도 진행중인 것 같습니다. 63년도에 현행상법이 제정될 때에 회사법분야에 큰 변화가 있었고, 84년도에 회사법의 100餘條를 망라하는 부분에 개정이 크게 있었는 데, 지금 현재 우리 회사법이 우리 현실에 잘 들어 맞는지, 개정이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되어야 할런지 개정작업에 조언을 해 주시는 의미에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李泰魯：현재 진행중인 법무부의 회사법개정심의작업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다만 주식회사제도와 우리 현실사이에는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실을 억지로 法制에 附會시키느냐, 制度를 현실에 맞게 고치느냐 아니면 본연의 주식회사와 예상하지 아니하였던 현실을 수용하기 위한 이원적인 주식회사제도를 둘 것이냐에 관해서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二元的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학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가지 주식회사가 있다고 봅니다. 본래의 주식회사의 제도의 이상에 맞게 설립·운영되는 것이 있고, 전혀 그러하지 않은 閉鎖會社들이 많습니다. 그토록 만연되어 있는 것을 마치 그것이 없는 양 눈감아 버릴 수가 있는가 또는 억지로 법에 맞추도록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閉鎖會社에 관련된 특칙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이원적인 바탕에서 주식회사제도를 보아야 하는 문제, 실정법의 개정에 앞서서 현행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되도록이면 현실에 적어도 거래안전을 문란시키는, 회사관여자의 이해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는 해석에 있어서도 현실을 수용하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大株主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理事에 準하는 責任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安慶峰：회사법개정과 관련해서 소규모 폐쇄회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상법규정상 회사법편을 보면 小規模會社에 대한 배려도 없고, 대규모 회사나 기업집단 등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독점금지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어서, 大規模會社도 빠지고, 小規模會社도 빠지면 정작 商法의 會社編이 규율하는 부분이 어디인가 하는 것이 모호합니다. 오히려 상법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회사내부적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든지 그렇지 않다든지 하는 논의가 있을 때 뿐이고, 정작 회사법이 규율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변호사친구들을 보면 security다 banking이다 해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는 접근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회사법을 공부하는 법학도로서 어디에다 중점을 두어 공부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李泰魯：지금 질문은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기본구조적인 이야기도 있겠고, 살아있는 법으로서의 회사법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 후자의 문제로서 가령 세법문제로 등장하는 것중의 상당수는 회사법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法人株主가 新株의 有利發行의 경우 失權을 합니다. 그러한 失權의 決定을 한 이사는 그 法人株主의 株主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런데, 少數株主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不均等減資에 있어서도 법인주주가 減資에 있어서 자본환급을 받지 못하고 주식을 소각당하게 되어도 법인주주의 주주와 이사진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많은 상장기업의 지배주주의 친인척들이 衛星會社를 만들어서 上場會社와 거래하면서 상장회사에는 불리하고, 자기네에게는 유리한 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利益衝突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데, 소수주주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회사법이 살아 있느냐 하는 자체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團束을 위한 特別法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특별법규정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또한 회사법의 체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또 상장기업에 있어서는 資本調達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제도자체가 영세자본을 규합해서 대자본을 만들어 적정규모를 갖춘 기업으로 활동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데, 자본조달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너무 도외시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실무에 가면 他人資本調達에 관련된 banking이라든가 自己資本調達을 위한 security문제라든가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회사라고 하는 것은 營利法人인데, 이윤계산을 위한 주식회사 재무제표에 관련된 규정같은 것을 학교에서 거의 무시하다시피 가르치고, 또 주식의 공개모집에 관련된 실제의 문제, 社債와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은 강의하다 뚝 잘려나가 버리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存續會社에 있어서 자본조달과 조달된 자본을 책임있게 관리, 운영해서 이윤을 많이 내어서 투자자에게 과실을 분여하고, 사회적으로는 유용한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고, 종업원에게 직장을 마련해 주고 이러한 가치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왜 회사제도를 갖게 되었느냐 하는 점을 회사법공부하면서 망각합니다. 그 사실을 망각하고 학문을 위한 회사법인 것으로 인식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李哲松：대개 株式會社의 機關, 특히 株主總會까지 강의진도를 나가고 시험을 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李泰魯：거기까지는 실제로는 쓸모가 없는지 모릅니다. (웃음) 왜냐하면 株主總會는 대개 참석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적 수요와 학술적 공급이 아귀가 맞지 않습니다.

학회활동

李哲松：稅法學을 발전시켜 오시는 과정에서 눈에 띄게 轉機를 이룬 대목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1983년도지요. 韓國國際財政協會를 창설하신 때부터 1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만 한국국제재정협회의 창설은 국제조세법의 발전에 중요한 전기였다고 생각됩니다. 국제조세분야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지요.

李泰魯：우리 경제의 해외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자본이 부족했기 때문에 해외자본을 많이 유치했고, 또한 근간에 와서는 우리가 해외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도 하고 있고, 후진국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는 어차피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발전시킬 수 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稅法분야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연구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별로 없었습니다. 있었

다면 오로지 우리나라에 진출한 해외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에 대한 관심만이 있었을 뿐이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 예를 들면 移轉價格, 恒久的 施設, 또 비교적 드물니다만 租稅條約의 操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및 그런 기본적인 것과 아울러 각종의 외국기업과 우리기업과의 거래형태에 대한 개별적인 유형별 연구들이 진척되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국제재정협회(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국제조세에 대한 최대의 국제적 단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지부가 없어서 全鋌九변호사님, 金宇澤회계사님 등 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에도 사단법인으로 국제재정협회의 지부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하고, 많은 노력끝에 법인으로 설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李哲松：초대 이사장을 역임하셨지요. 83년도부터 85년도까지라고 기억됩니다만.

李泰魯：斯界의 權威者들을 규합하고, 중요기업을 법인회원으로 영입해서 매우 인적 구성이 튼튼한 단체를 만들었고, 그뒤에 매년 국제대회에 우리 회원을 파견했고, 저도 베니스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회의 때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지부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져서 이제는 국제재정협회의 국제총회의 panel에도 참여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뒤에 국세청에서도 이러한 국제조세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국제조세실, 국제조세국, 각 지방청의 국제조세과 등을 설치해서 국제조세가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80년대초에 이러한 단체를 만들어서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온 것이 그러한 행정에도 밑거름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李哲松：그리고 우리 稅法學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방법론적인 전기를 이루신 것이 있습니다. 80년도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때 "判例體系 租稅法"을 펴내시면서 稅法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새로운 체계로 정리해 주셨고, 이에 앞서서는 "判例敎材 會社法"을 펴내셨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그 때 법학연구소가 아시아재단의 자금지원을 받아서 여러 분야의 판례교재시리즈가 나오게끔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 때 어떤 신념을 가지시고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잠깐 그 때 말씀을 해 주시지요.

李泰魯：제가 소위 case method에 의한 교육을 받은 영향이 있었겠지만 당시로는 우리가 지나치게 이론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학리적인 측면에만 치중하고, 판례발전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제가 아시아재단 David Steinberg 한국지부대표의 협조를 구하는데, 실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판례교재를 각 분야에 걸쳐서 만들자고 한 아이디어는 제가 제안한 것입니다. 당시 법학연구소소장은 鄭熙喆교수님이었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업추진의 원동력이 되어 주신 분은 劉基天선생님이었습니다. 아시아재단에서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때 동시에 법학연구소에서 註釋判例集이 아시아재단의 도움으로 간행이 되었습니다. 주석판례집은 불행히도 그 뒤에 중단이 되었고 이제는 잊혀진 작업이 되어 버렸습니다만, 판례교재는 오늘날까지도 개정판도 나오고 있고 새로운 분야의 新版도 나오고 있어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판례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러한 판례교재의 내용이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좀더 내실있는 것이 되어 주고, 보다 많은 자료가 포용된 것이 되었으면 했던 것이 제 소망이었는데,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발전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李哲松：그러나 지금 判例體系 租稅法은 저의 경우 성경책처럼 보고 있고, 稅法하는

분들 다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책을 계속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李泰魯：당초에 제가 만들었던 判例體系 租稅法은 편입할만한 판례의 수도 적었고 편집도 조잡하여서, 그저 처음 나왔던 것이라는 의의가 있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安慶峰교수를 맞아들여서 이제 내놓기에 덜 부끄러운 책이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安敎授의 그동안의 고생에 대해서 다시금 감사합니다. 황소같은 일꾼이지요.

玉武錫：선생님이 판례교재를 가지고 강의하실 때, 우리가 다른 판례나 결정례를 이해하면서 판례요지를 인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자주 하시는 데, 판례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옳은 방법입니까?

李泰魯：요지는 벌써 그 요지를 만든 사람의 주관이 들어 있고, 또 판결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와 아울러 보아야 의미가 있지, 가지를 다 쳐서 要旨만 보았을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오도할 우려가 있습니다.

玉武錫：결국 그와 같은 것은 우리가 法學을 공부함에 있어서 주로 판례를 유형화해서 이론화할 때, 저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점으로 생각됩니다.

李泰魯：결국 그것이 歸納的인 方式인데요, 미국사람들이 경계하는 것이 generalization입니다. Generalization을 하다 보면 抽象化가 됩니다. 추상화가 되면 이론의 유희에 빠질 수가 있고, 구체적 타당성에 불비할 수 있습니다. 실용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영미적 문화에서는 敬遠하지요. 그래서 어떤 여러가지 자료에서 추출해서 essence만을 뽑아서 몇마디로 압축한다는 것은 그것대로 편의성도 있고, 효용도 있지요. 그러나 그와 같은 추상화된, 압축된 것만 가지고 演繹的으로 풀어나가면 원래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설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제3자로 하여금 다시 우리나라말로 번역하게 하면 다른 책이 나올 것입니다.

安慶峰：저희들이 학부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세법과목을 수강할 때 法典을 가지고 공부했었습니다. 대학원을 진학하고 보니까 저희 후배들은 "判例體體系 租稅法"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었고, 지금 학생들은 "租稅法槪論"을 가지고 아주 편하게 공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租稅法槪論 편찬과 관련하여 어떤 생각으로 편찬하시었고, 편찬시 어떤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李泰魯：租稅法槪論은 사실 쓰기를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것이 1985년인데, 그 전에도 출판사에서도 써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힘을 부쳐서 못하다가, 조세통람사에서 사람을 보내 또 졸라서 교과서를 처음부터 새로 썼다기보다 그동안 산재해있던 글을 모아서 약간의 편집을 가해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여기 계신 李哲松교수, 玉武錫교수가 많이 도와 주어 용기를 내어 출간을 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상호간 연결도 자연스럽지 않았고, 내용도 불충분했고, 틀린 데도 많았던 것을 版을 거듭할 때마다 安교수, 朴震군 등이 도와 주어서 조금씩 개선해 왔습니다. 세법교과서의 문제점은 해마다 개정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공을 잘못 선택한 탓으로 해마다 손을 대어야 하는데, 법령의 개정이 연말에 이루어지고, 시행령·시행규칙까지 따라서 개정되려면 다음해 1월말·2월초가 되는데 새 학년은 3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개정작업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미봉적으로 해 왔던 것을 작년여름부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았고, 부족한 데를 보완해서 이제 겨우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

법연수원에 입소할 때까지 자유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던 朴震군이 참으로 심혈을 기울여 책전반을 단손한 교정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챙기면서 철저히 검토해 주었다는 점이 고맙고, 그로 인해서 많은 오류를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매우 불만족스러운 편이지만 세법자체가 매우 복잡한데 우선 이것을 교과서없이 강의한다고 하는 것은 安교수시절에는 부득이했던 것이고, 사실은 교과서없이 가르칠 수 없지요. 安교수가 교과서없이도 오늘날처럼 탁월하게 세법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安敎授의 비범한(?) 재능을 여실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웃음)

安慶峰：법조실무에 종사하는 친구들을 만나 세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실무처리시 "租稅法槪論"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도 듣고, 저도 租稅法槪論 개정작업시 도와 드렸던 일이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租稅法槪論 혹은 稅法과 關聯된 책을 저술하실 때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李泰魯：두가지 측면에서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과서에서는 이론구성이 매우 초보적입니다. 개설에 치중하다 보니 전체적인 윤곽을 묘사해주는 데는 크게 부족한 점이 없지만 조금파고 내려가서 이론전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요논점에 대한 이론전개를 보완해야 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安교수가 가끔 나에게 제의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데, 各論, 즉 각 重要稅目—所得稅法, 法人稅法, 相續·贈與稅法, 附加價値稅法—을 각각 單卷으로 낼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개별세법마다 책이 실무안내서 밖에 없고, 이론서는 전적으로 결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이 책무는 여러분에게 상속시켜 드립니다. 消極財産만 상속시키는 것 같습니다. (웃음) 여기에 계신 네 분이 각각 분야를 나누어 한권씩 저술하시면 바람직하겠지요. 거기에다가 總論이 보완되었을 때, 우리 세법학이 비로소 본격적인 단계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직도 槪論단계인데, 개론에 이르는 데 거의 3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각 세법별로 단행본을 만드는 데 약 10년이 소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0년만에 된다면 그렇게 늦은 속도로 보지 않습니다다. 다른 분야의 도서들도 보면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40년넘게 걸린 것입니다.

玉武錫："判例敎材 會社法"을 내시고, 이어서 84년도에 회사법개정을 할 때 개정된 회사법의 해설서로 "會社法講義"를 내셨습니다. 특히 會社法講義는 考試準備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實務하는 분들도 많이 찾는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判例敎材 會社法 및 會社法講義는 어떤 점에 특히 중점을 두어 책을 펴 내시었습니까?

李泰魯：회사법에 대한 관심은 오랫동안 갖고 있었습니다만 稅法쪽의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소홀했었습니다. 그 뒤에 법학연구소에서 간행되는 判例敎材 會社法을 편찬했고, 판례뿐만 아니라 해설도 아울러 곁들인 판례교재이었는데, 그 뒤에 회사법이 개정됨으로써 상당부분의 판례가 현행법에 비추어서 불필요하게 된 것이 있지요.

李哲松：株券發行前의 株式의 讓度라든가 하는 것이겠지요?

李泰魯：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해체하여 해설서와 판례교재를 분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判例敎材 會社法은 손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 당시까지는 3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회사법해설서인 "會社法講義"는 회사법의 대폭적인 개정을 계기로 해서, 李哲松교수를 잡아들여서(?) 새롭게 책을 꾸며 내게 되었습니다. 퍽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 책이 많은

사람에 의해서 읽혀지는 것을 알고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玉武錫：그 교재를 보면 새로운 시도가 한두개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정한 면수에 그래프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그림표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일정한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작은 활자로 특별히 항목을 빼내서 해설을 했다거나…. 그런데, 우리 전체 법학교과서가 어렵고, 고전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거기에 비하면 새로운 면모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와 관련하여 교과서전체의 체계나 전체 장정, lay-out과 관련해서 혹시 가지고 계신 소감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李泰魯：그 책을 처음 만들 때, 李哲松교수하고 참 많이 만났습니다.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그 때만 해도 제가 힘이 있을 때여서 만나면 다섯시간도 좋고 여섯시간도 좋고, 내가 하도 까다롭게 하니까 그 때는 이교수속이 뒤집혀졌겠지요. 상당히 엄격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이 토론도 하고 집필과정에서 博英社도 애를 먹었습니다. 특히 법대동문인 鮮于泰鎬씨가 편집을 맡았다가 혼이 났지요. 처음 판을 짠 것을 거의 뒤집다시피 해서 다시 짜고, 지금도 박영사의 李明載상무는 나만 보면 판 다시 짜자고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거쳤고, 그렇게 해서 만들고 난 뒤에도 초판에 오류가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3刷(실제로는 3訂)에 이르러서야 면모를 갖추었다고 생각이됩니다. 여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나보다 李哲松교수가 답변할 사안같은 데요.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했습니다. "결국 현대 大規模會社의 病幣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감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을 경영자에게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자치에만 맡기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겠다. 평범한 교과서나 司試準備書로 만드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시장성이 없어도 좋으니 뭔가 하나 회사법학에 기여하는 것을 만들자" 하는 순수한 의욕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책 팔아서 경제적 이득을 본다고 하는 것은 전문분야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것은 단념하고, 그래도 이 길을 걸으면서 뭔가 남기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지요. 그 때로서는 상당히 순수하게 학문적 기여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 중심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책의 특색의 하나이고, 고시잡지에서 어느 사법합격자의 서평을 보면 "그 책에는 시험에 불필요한 부분도 있다. 그런 것이 끼어 있기 때문에 기억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더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때에 중요논점을 선별해서 그 중요논점에 대해서 남보다 깊이 다루자, 순수히 절차적이고 조문나열식인 것은 빼자고 해서 비교적 조문나열적인 것은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李哲松교수가 증권거래에 관심이 많아서 증권거래법상의 규정이 많이 반영되어 있지요. 또 비교법적으로 독일법과 미국법의 제도, 개념을 부각시킴으로써 우리의 것을 보다 선명하게 부각되도록 했고, 도안같은 것이 많은 것은 李교수가 그런 도안을 참 좋아 합니다. 심지어는 웬만한 사람은 알지 못하는 수학공식같은 것도 들어있는 것은 이교수의 아이디어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논점별로 하다 보니까 특정논점에 대한 논문집처럼 장황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3版부터인가 많이 추려서 전체적인 균형을 잡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실무서와 달라서 회사법전반에 대한 사고 관찰방법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에 보다 유의해서 저술했고 그나마

그 수준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탁월한 李교수의 재능에 힘입은 바 큽니다. 그것은 결코 내가 그냥 칭찬의 말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보직활동

李哲松：잠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선생님께서는 학교의 보직을 별로 안하신 편입니다만 71년도에 교무처일을 보신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 때 서울대학교 10개년계획이 수립되었고, 그 계획의 하나로서 서울대학교가 이전하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대학교육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대학의 현안문제라든지 특히 법학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李泰魯：1971년에 교무부처장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때는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때이었습니다. 캠퍼스가 동숭동에서 현재의 관악산으로 이전을 하는 과정이었고, 그러한 이전을 계기로 서울大學校 10個年計劃의 수립과 집행을 하는 그 기간에 속합니다. 그 때 서울대학으로서는 10개년종합계획을 통해서 많은 진통도 있었고, 개혁도 있었고 발전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때 과정에 대한 좋은 자료로서는 당시의 총장이신 韓沁錫박사의 "冠岳山을 바라보며"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의욕적인 활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무행정의 일상업무와 아울러 특히 그 때의 세계각국의 여러 대학의 총장들을 초빙하여 개최되었던 서울大學校發展 國際學術大會 실무책임을 맡았었고, 그 뒤에 한심석총장님을 모시고, 미국, 유럽, 동남아의 여러 대학을 방문하면서 대학의 행정에 관련된 견문을 쌓았던 것이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머물렀던 기간은 오래지 않습니다. 2년의 일차 임기만 마치고, 사실은 10개년계획의 집행기간이어서 중간에 한 term만 하고 두면 곤란하다고 하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에 보따리 싸가지고 나온 것은 오늘날까지도 교무처의 일화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의 행정을 담당했던 기간은 불과 2년입니다. 그러나 그 때가 서울대학으로서는 중요한 전환기이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 많은 개혁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그것이 모두 소기대로 결실을 거두었느냐에 대해서는 懷疑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맺는 말

權光重：장시간에 걸쳐 선생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말씀이 후학들에게 좋은 지침이 되고, 자극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마감하는 의미에서 후학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李泰魯：落葉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를 태워서 남을 데펴 주거나, 아니면 봄이면 피어날 새잎을 위하여 밑거름이 되는 것이지요. 젊은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을 하든지 서둘지 말고 차근차근히, 그러나 꾸준히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덧 많은 것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權光重・李哲松・玉武錫・安慶峰：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李泰魯：예, 감사합니다.